

1993. 11.

光州直轄市西區都市低所得住民住居環境凱旋地區共同住宅建立特別會計設置
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都 市 建 設 委 員 會

光州直轄市西區都市低所得住民住居環境凱旋地區共同住宅建立特別會計設置

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3年 11月 日

都市建設委員會

1. 審查經過

가. 提出日字 : 1993年 9月 24日

나. 提出者 : 光州直轄市 西區廳長

다. 回附日字 : 1993年 10月 4日

라. 上程日字 : 第26會 西區議會(臨時會) 閉會中

— 第2次 都市建設委員會 (93年 11月 2日) 上程

— 第2次 都市建設委員會 (93年 11月 2日) 質疑. 討論

— 第2次 都市建設委員會 (93年 11月 2日) 原案 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提案理由

구 직제 개편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로 소속
이 변경됨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코자함

나. 主要骨子

○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설특별회계설치조

례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2호 분임징수관 "건축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동조 5호 "건축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회계공무원 관직을 변경하고

- 부칙 ①항중 "(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②항 (경과조치)중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 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이 조례를 준용한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趙澤龍)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9일 광주직할시 서구 규칙 제287호에 의거 광주직할시서구 실과 직제규칙중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본조례를 관장하던 건축과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로 직제가 개정되어 회계공무원의 관직 또한 변경되어야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였음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없음

5. 討論 要旨 : 없음

6. 修正案 要旨 : 없음

7. 審查結果 : 원안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

□ 光州直轄市西區都市低所得住民住居環境凱旋地區共同住宅建立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
條例案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설특별회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光州直轄市西區都市低所得住民住居環境凱旋地區共同住宅建立特別會計設置條例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서구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개발과장
3. 경 리 관 — 도시국장
4. 분임경리관 — 도시개발과장
5. 채무관리관 — 도시개발과장
6. 지 출 원 — 도시정비계장
7. 수입금출납원 — 도시정비계장
8.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 도시정비계장

제 3 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분양금 수입
2. 재정부·융자 및 주민주택기금 융자금
3. 타회계 보조금
4.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 4 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건립비
2.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복리 시설비
3. 토지 및 건물보상금
4. 이주대책비
5. 기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제경비

제 5 조 (지방채 발행등)

1. 이 회계는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 6 조 (지구별 재산제) 이 회계는 지구별로 재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잉여금의 처리)

1. 이 회계의 매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 본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지구별 최종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본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 8 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설치조례 신규 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
<p>제1조 (목적) 이조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한다)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 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p> <p>1. 징수관 — 도시국장</p> <p>2. 분임징수관 — <u>건축과장</u></p> <p>3. 경리관 — 도시국장</p> <p>4. 분임경리관 — <u>건축과장</u></p> <p>5. 채무관리관 — <u>건축과장</u></p> <p>6 ~ 8 (생략)</p>	<p>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p>2. 분임징수관 — <u>도시개발과장</u></p> <p>(현행과 같음)</p> <p>4. 분임경리관 — <u>도시개발과장</u></p> <p>5. 채무관리관 — <u>도시개발과장</u></p> <p>(현행과 같음)</p>
<p>제3조 (세입) 1 ~ 4 (생략)</p>	<p>(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제4조(세출) 생략	(현행과 같음)
제5조(지방채 발행등) 1 ~ 2 (생략)	(현행과 같음)
제6조(지구별 채산제) 생략	(현행과 같음)
제7조(임여금의 처리) 1 ~ 2 (생략)	(현행과 같음)
제8조(준용) 생략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① <u>(시행기간)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효력을 가진다.</u>	① <u>(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② <u>(경과조치) 이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이 조례를 준용한다.</u>	② <u>(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u>